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金均燮)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6월 15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대강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및 건축설계·설비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소개와 함께 “04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건축물 적용 대체에너지설비 설계 관련 연구의 중간결과도 발표했다.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이란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대체에너지설비 적용사례에 대한 모델제시, 사업홍보 등을 목적으로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지원대상으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의무이용기관이 해당된다. '04년도에는 50억원의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으며, 6월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7월중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설비 시공업제도 참여하여 관련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됨으로써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되어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대체에너지기술의 이해 및 국내 대체에너지 관련업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안내

04년도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 지원안내

☐ 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근거법령 및 규정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제2항(02.3.25 개정)
-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6조의 6(04.3.29 개정)
- 산자부 고시 제2004-47호 :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04.4.28)
- 산자부 공고 제2004-110호 :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운영규정(04.4.28)

☐ 적용 대상기관 및 건축물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투자·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

- 건물용도 : 공공용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학교 제외) 및 복지,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 건물규모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건축물

☐ 적용 기준

해당 건축물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입

☐ 신청방법

시범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와 함께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로 제출

☐ 신청 접수기한 : 2004년 6월 30일(우편접수는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대체에너지보급처 대체보급2팀(전화 : 031-260-4682~3)